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변상금 부과고지서(부과내역)

* 점유번호 : 73402591

대상자	성명 오승욱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화번호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 또는 사용수익 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		비 고
					재산가액 (원)	사용 요율 (%)	연간 사용료 (원)	부과기간	변상금 (원)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958	철도용지	5,124	650	11,440,000	5%	572,000	2019.05.31 ~ 2019.12.31	404,318		
	철도용지	5,124	650	12,090,000	5%	604,500	2020.01.01 ~ 2020.12.31	725,400		
	철도용지	5,124	650	14,560,000	5%	728,000	2021.01.01 ~ 2021.12.31	873,600		
	철도용지	5,124	650	16,185,000	5%	809,250	2022.01.01 ~ 2022.12.31	971,100		
	철도용지	5,124	650	14,170,000	5%	708,500	2023.01.01 ~ 2023.12.31	850,200		
	철도용지	5,124	650	14,170,000	5%	708,500	2024.01.01 ~ 2024.02.14	104,533		
합계				3,900			4,130,750		3,929,150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사용·수익함에따라「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변상금을부과하오니, 지로통지서에 표기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만약, 납부기한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02월26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오승욱 귀하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주: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